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. 8. 9 선고 2022가단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7. 19.

판 결 선 고 2022. 8. 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B와 D 사이에 2019. 10. 10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C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20. 5. 12. 접수 제4297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다. 피고 B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9. 10. 11. 접수 제7339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C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 김경준

별지